

#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8기 반기 2022년 9월 30일 현재

# 목 차

|                                 |   |
|---------------------------------|---|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  | 1 |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        | 2 |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 | 3 |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의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해당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우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한 상 우



2022년 11월 10일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2022년 11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제8기 반기말 2022년 9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

(단위: 원)

| 구 분                                   |                     | 당반기말          |
|---------------------------------------|---------------------|---------------|
| 1. 자기자본                               |                     | 3,226,969,914 |
| 2. 최소영업자본액( $A=A_a+A_b+A_c$ )         |                     | 927,140,256   |
|                                       | 필요유지자기자본( $A_a$ )   | 875,000,000   |
|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A_b$ ) | 12,067,619    |
|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A_c$ ) | 40,072,637    |
| 3. 최소영업자본액2( $B=A_a+(A_b+A_c)*50\%$ ) |                     | 901,070,128   |

별첨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참조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제8기 반기말 2022년 9월 30일 현재

##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

###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작성지침

####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주식회사 킹슬리자산운용(이하 ‘회사’)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투자업규정상 2종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3에 의하여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2) 최소영업자본액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

금융투자업규정 제3-26조, 제3-27조 및 제3-28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기준             |
|--------|-----------------------|
| 경영개선권고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     |
| 경영개선요구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2(*)에 미달 |
| 경영개선명령 |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    |

(\*) 필요유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합계액

## 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

최소영업자본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가) 필요유지자기자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1호, 제118조의6제1호 및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 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
- 다)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

회사의 당반기말 현재 최소영업자본액의 세부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 대상금액           | 적용비율   | 필요자기자본             |
|--------------------------|------------------------------------------|----------------|--------|--------------------|
| 필요<br>유지                 | <b>필요유지자기자본 (A=가+나+다+라)</b>              |                |        | <b>875,000,000</b> |
|                          | 가. 투자자문업                                 | 250,000,000    | 70.00% | 175,000,000        |
|                          | 나. 투자일임업                                 | -              | 70.00% | -                  |
|                          | 다. 집합투자업                                 | -              | 70.00% | -                  |
|                          | 라. 사모투자업                                 | 1,000,000,000  | 70.00% | 700,000,000        |
| 고객<br>자산<br>운용           | <b>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B=가+나+다)</b>              |                |        | <b>12,067,619</b>  |
|                          | 가. 집합투자재산(증권집합투자기구)                      | -              | 0.02%  | -                  |
|                          | 나. 집합투자재산(기타집합투자기구)                      | 40,225,396,580 | 0.03%  | 12,067,619         |
|                          | 다. 투자일임재산                                | -              | 0.03%  | -                  |
| 고유<br>자산<br>운용           | <b>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C=가+나+다)</b>              |                |        | <b>40,072,637</b>  |
|                          | 가. 증권                                    |                |        |                    |
|                          | 지분증권 (해외현지법인 지분)                         | -              | -      | -                  |
|                          | 지분증권 (관계회사지분)                            | -              | 7.50%  | -                  |
|                          | 지분증권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 40,778,457     | 7.50%  | 3,058,384          |
|                          | 채무증권 (거래상대상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              | -      | -                  |
|                          |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인 경우)       | -              | 1.00%  | -                  |
|                          | 채무증권 (그 외의 경우)                           | 740,285,060    | 5.00%  | 37,014,253         |
|                          | 집합투자증권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650,652,000    | -      | -                  |
|                          | 집합투자증권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 -              | 5.00%  | -                  |
|                          | 기타증권                                     | -              | 7.50%  | -                  |
|                          | 나. 파생상품                                  | -              | 10.00% | -                  |
|                          | 다. 대출채권                                  | -              | 7.50%  | -                  |
| <b>최소영업자본액 (D=A+B+C)</b> |                                          |                |        | <b>927,140,256</b> |